

# 재무제표 제출 안내

- **관련근거** :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**신고대상** :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(개인)
  - ※ 재무제표 1차 신고기간(4.1~4.15)에 미제출한 3~6월 결산업체(법인)도 포함
- **신고기간** : '24.6.3(월) ~ 6.10(월)까지
- **신고서류**
  - 재무제표 신고서 1부(협회 통합전산시스템上 출력 가능)
  - 재무제표 1부(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)
    -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가 확인·날인한 자료 제출
- **전산신고 및 서류제출 방법**
  - [전산신고]
    - 협회 통합전산시스템(<http://siljuk.koras.org>)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
      - ① 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上 재무제표 등록
        - (재무제표 신고서, 재무상태표 항목, 손익계산서 항목 입력 후 저장)
      - ② '실적서류 제출 및 출력(2차)'→ 재무제표 선택 후 서류제출  
→ 신고서 출력
  - [서류제출]
    - 재무제표 신고서, 재무제표 원본(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실증명원 첨부)을 우편 발송
      - ※ 제출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27길 2, 일동제약빌딩 3층(06752)
- **문의** : 정보관리센터(☎02-3476-7787, 내선번호 4번)